

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국가유산기본법」  
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5 월 17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077호

붙임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77호

##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

제1조(「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」의 개정)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문화재에 대한 감면)”을“(국가유산에 대한 감면)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

제4조(「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문화재 및 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 및 국가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문화재·행정·교육·언론”을 “국가유산·행정·교육·언론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### **제5조(「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」의 개정)**

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문화재보호”를 “문화유산보호”로, “문화재로”를 “국가유산으로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문화재관련업무”를 “국가유산관련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문화재관련업무”를 “국가유산관련업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지정문화재로의의”를 “지정유산으로의”로, “지정문화재의”를 “지정유산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지정문화재”를 “지정유산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문화재관련”을 “국가유산관련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담당부서”를 “국가유산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유산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문화재보호법”을 “문화유산법”으로 한다.

### **제6조(「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**

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지정문화재”를 “지정유산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## **제7조(「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

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### 제8조(「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체육시설·문화재”를 “체육시설·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### 제9조(「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### 제10조(「여수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호다목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법」”으로, “문화재 및”을 “국가유산 및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(이하 “문화재”)”를 “「문화유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(이하 “국가유산”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문화재의”를 “국가유산의”로,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가유산청장”으로 한다.

#### 제11조(「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6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### 제12조(「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1.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6조(문화산업국) ① (생   략)  ② 문화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문화예술 진흥 및 <u>문화재</u> 발굴·관리, 문화예술행사 2. ~ 21. (생   략)	제6조(문화산업국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. 1. 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 ----- 2. ~ 21. (현행과 같음)

### 2.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4조( <u>문화재에 대한 감면</u> ) (생   략)	제4조( <u>국가유산에 대한 감면</u> ) (현행과 같음)

### 3.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3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) ① (생   략)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	제3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<p>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</p>
---	---

4.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협의회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시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문화재 및 문화재 활용 관련 전문가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<u>문화재·행정·교육·언론</u> 등 관련분야 전문가</p> <p>제13조(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협의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국가유산 및 국가유산</u> -----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국가유산·행정·교육·언론</u>-----</p> <p>제13조(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, 전라남도지사,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(사무국 포함)을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을 문화재청장, 전라남도지사,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·파견할 수 있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국가유산청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국가 -----  
유산청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# 5.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향토문화유산”이라 함은 <u>문화재보호법</u>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<u>문화재</u>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·예술·학술 및 경관적으로 보존·보호·관리 할 가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문화유산법</u> ----- 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 <u>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치가 있다고 지정 또는 인정되는 유형·무형·기념물·민속자료 등(이하 “문화유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2. (생략)

제3조(위원회 설치) ①·② (생략)

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관련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위원회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국가유산관련업무 -----.

④ -----  
----- 국가유산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국가유산관련업무 -----  
-----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 
-----.

1. ~ 3. (생략)

4.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의 승격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

5. 지정문화재의 복원·보존·보호·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전문위원) ① (생략)

② 전문위원은 문화재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보호구역 지정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담당부서 및 위원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지정유산으로의 ----- 지정유산의 -----

5. 지정유산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전문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국가유산관련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호구역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국가유산담당부서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p>③ (생략)</p> <p>제15조(경비보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 문화유산(개인·단체)을 관리·보호·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<u>도지정문화재</u>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7조(기록작성 및 보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<u>문화재</u>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9조(준용 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<u>문화재보호법</u>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경비보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도지정</u> <u>유산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기록작성 및 보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국가유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9조(준용 규정) ----- ----- - <u>문화유산법</u> ----- -----.</p>
--	--

6.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

현행	개정안
제4조(유물의 구입) ① ~ ③ (생략)	제4조(유물의 구입) ① ~ ③ (현행)

<p>략)</p> <p>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거나, 국가 또는 시도 <u>지정문화재</u>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4조(유물평가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<u>문화재</u> 및 유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	<p>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지정유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유물평가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7.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9조(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<u>문화재</u>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해당</p>	<p>제29조(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 ----- -----</p>

유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종료됨 으로써 해촉된다. ③·④ (생략)	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8.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9조(보훈복지 지원사업 등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보훈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. 1. (생략) 2. 시가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<u>체육시설·문화재</u> 의 사용료, 입장료 감면 3. ~ 13. (생략)	제9조(보훈복지 지원사업 등) 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체육시설·국가유산</u> ----- 3. ~ 13. (현행과 같음)

### 9.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4조(지원사업 등) ① 여수시장	제4조(지원사업 등) ① -----

<p>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의 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<u>문화재</u> 관람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 금 감면</p> <p>4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국가유</u> <u>산</u> ----- -----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#### 10.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의2(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 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)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(3)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에 대한 이격거리, 높이,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 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 다.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	<p>제12조의2(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 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) 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

다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및 「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」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
2. ~ 4. (생략)

제29조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“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(이하 “문화재”라 한다)를 직접 관리·보호하기 위한 건축물

2.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건축물

②·③ (생략)

다. 「문화유산법」-----

국가유산 및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-----  
-----  
-----.

1. 「문화유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(이하 “국가유산”-----

2. ----- 국가유산의 ----- 국가유산청장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 11.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현행	개정안
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(현행)

<p>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“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 으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문화재</u> 복원공사의 경우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국가유산</u>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12. 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설치장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문화재</u> 보호구역, 하천부지, 산지, 도로부지,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설치장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국가유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